

##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역할

김 형 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협력실장

산학협력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은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I.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배경

대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받는 재정 규모가 커지고, 배출하는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이러한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의식 형성이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 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하며, 산

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은 산·학·연간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촉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업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또한 어떻게 하면 기업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대학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제공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조직과 예산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정부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때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과거에도 산·학·연 간의 협력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002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어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 Ⅱ.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3년 5월 27일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근거, 기능, 조직, 재정, 회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이 법률에 제5장으로 '산학협력촉진'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서 대학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그것은 법인으로 하고, 법원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단장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설립 등기 신청 시 산학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학칙 사본과 산학협력단의 정관 사본, 단장의 취임 승낙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대학의 장이 작성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제26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8) 단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학협력단장의 지위를 보면,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되고,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의 장이 임명하며 그 소관 업무 수행에 있어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의 다른 소속 기관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의 계약은 당해 대학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제24조)고 규정하는 등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Ⅲ. 산학협력단의 업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 2)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회계를 관리한다.
- 3) 지적 재산권의 취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한다.
- 5)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다.
  - ①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② 산학협력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 ③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 재산권의 수탁 관리
  - ④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당해 대학 교지 내 소재) 간의 상호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 ⑤ 당해 대학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관한 지원
  - ⑥ 당해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 기업 실험 공장에 대한 지원
  - ⑦ 산업 기술 단지 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의 지원
  - ⑧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의 지원 등이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술이전에 관한 전담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으며, 특허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승계 소유한다.

#### Ⅳ. 산학협력단의 재정과 회계

대학의 재정과 회계 관리는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의 예산회계 관련법규에 의거 관리되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 특례 규칙에 의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은 비록 대학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독립법인으로서 별도의 예산과 회계 관리 체계를 갖도록 제도화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산학협력단의 재정과 회계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3년 5월 27일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과거 허술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 1. 산학협력단의 수입

산학협력단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제3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학교기업 수입금(국·공립대학에 한함)
- 이자수입
-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2. 산학협력단의 지출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제32조).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대학의 시설·운영지원비
-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학교기업의 운영비(국·공립 대학에 한함)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산학협력과 관련한 산학협력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3.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그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만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되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 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자금계산서, 부속서류 첨부)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 사업 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V. 학교 기업

대학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 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당해 대학의 교지 또는 부속시설 내에 둘 수 있다.

학교기업은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영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기업의 설립절차는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학교기업 지원조직 설치 및 직원 채용이 가능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1 내에서 현장 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순이익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기업의 회계 관리는 학교기업의 종류별로 구분계리하며, 사립학교는 교비회계로 계상처리하고, 국·공립학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계상한다.

## VI. 맺는말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과거 허술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

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산학협력 활동에 있어 국·공립대학의 경우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묶여 대학이 독자적 회계로 운영하지 못하고, 계약체결이나 지적재산권 취득 등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였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산학협력에 관련하여 증가하는 업무와 회계를 법인 회계로 할 것인가 또는 학교 회계로 할 것인가 등 대학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절차의 현실화는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산학협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의 상호협력과 끊임 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산학협력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은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